

특별회계 및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「증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 등 일부 개정조례

[2023. 11. 24
조례 제1119호]

제1조(「증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) 증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 중 “2023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2조(「증평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」의 개정) 증평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“2023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3조(「증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) 증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 중 “2023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4조(「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」의 개정)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의2 중 “2023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5조(「증평군 농·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증평군 농·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